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재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73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0. 16.

발의자 : 이재관 · 권향엽 · 이병진
김남근 · 문금주 · 최민희
문진석 · 박해철 · 정진욱
박민규 · 장종태 · 박홍배
황정아 · 송재봉 · 김동아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모든 등록요건을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 원칙이나, 패션 · 잡화 등 유행에 민감한 일부 물품군에 대해 신규성과 선출원 등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 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
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공지되거나 공용이 된 디자인권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해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.

이에,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는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제3자 권리보호를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

존 공고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에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디자인일부심사제도 운영을 하기 위함임(안 제62조제5항 신설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).

다만, 디자인권자의 법적 안정성과 제3자의 권리보호 간 이익균형 도모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은 등록공고일 이후 1년 내에만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).

이와 더불어,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중 관용적으로 기재되어 사실상 무의미한 ‘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’의 기재란을 삭제하여 출원서 작성률 간소화함으로써 출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(안 제37조제2항 및 제181조제3항).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디자인의 설명

제6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3항의 규정”을 “제5항까지”로 한다.

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 ·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.

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3개월이 되는 날까지”를 “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.

제181조제3항 중 “제37조제2항제2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 및 같은 조

제3항”을 “제37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7조(디자인등록출원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제62조(디자인등록거절결정) ① ~ ④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<u>제3항까지의 규정</u>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</p>	<p>제37조(디자인등록출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2. 디자인의 설명</u> 3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2조(디자인등록거절결정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·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----- ----- <u>제5항까지</u>----- ----- -----</p>

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.

제68조(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)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.

<단서 신설>

-----.

제68조(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) ① -----

-----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-----

---. -----

-----.
다만,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.

<p>1. ~ 3. (생략) ② ~ ④ (생략)</p> <p>제181조(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) ① · ② (생략)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<u>제37조제2항제2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 및 같은 조 제3항</u>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1조(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 <u>제37조제3항</u>----- ----- -----.</p>
--	--